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26호)
- 인요한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5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설치 시설 확대 (박주민의원안, 인요한 의원안)	3

I. 개요

1.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2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27.
-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2.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인요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19.
- (3) 회 부 일 : 2024. 9.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도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설치 시설 확대 (박주민의원안, 인요한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에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현행	박주민의원안	인요한의원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6의3. (생략)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 -----.
<신설>	1. ~ 6의3. (현행과 같음)	1. ~ 6의3. (현행과 같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8. 「전통시장 및 상점	8. 대통령령으로 정하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 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 설>	10. (현행 제7호와 같음)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신 설>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신 설>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신 설>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생략)		14.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7조의2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관광지·관광단지 소재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설치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박주민의원안, 인요한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박주민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인요한의원안)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에 취약할 수 있는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개정안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의무설치 시설 확대 대상 >

박주민의원안	인요한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만, 두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에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포함¹⁾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²⁾에 따라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의 경우는 상주 직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현행법 제47조의2제3항³⁾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음.

□ 또한, 전통시장은 일반적으로 옥외 면적이 넓어 날씨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이상이나 배터리 방전,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외에서 관리가 어려우므로 설치 장소 선정에 제약이 있고, 상인의 자율조직인 현실에 비추어 설치 및 관리 주체 선정 등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문화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 추가에 대하여도, 고연령층이 급성심장정지

1)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보건복지부 지침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 2024.5., 13쪽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생 고위험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학교,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설치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임.

< 연령별 급성심장정지 발생(2022) >

(단위 : 건, %)

연령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 이상
발생	329 (0.9)	363 (1.0)	877 (2.5)	1,196 (3.4)	2,437 (7.0)	4,520 (12.9)	6,419 (18.3)	7,617 (21.8)	11,255 (32.1)

* 출처 : 2022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질병관리청)

□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일반인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⁴⁾을 통하여 신규 설치 예산과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국고보조율 50%)하고 있음.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우선 지원 시설 >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관광안내소
-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시설 등

* 출처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4) 응급의료기금의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2831-301)’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10억 5,000만원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다만, 의무 설치 시설 확대는 급성심정지 발생 위험도, 접근성, 관리 가능성, 설치 비용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벤처부) 전통시장은 설치 장소 확보, 설치비용 부담, 타 의무 설치대상보다 관리자 지정 애로, 사후관리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통시장의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설치보다는 관찰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